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재봉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82 발의연월일: 2024. 6. 21.

발 의 자: 송재봉ㆍ김동아ㆍ김문수

이강일 · 김우영 · 이연희

이광희 · 황명선 · 김남희

서미화 · 임미애 · 임호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소재한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

현재 해양수산부는 내륙에 해양과학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내륙 청소 년의 해양의식 고취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에 국 립미래해양과학관을 건립 중임.

이에 국립미래해양과학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「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,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조, 제2조, 제22조 및 제26조).

법률 제 호

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"을 "국립해양과학관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"로 한다.

제1조 중 "국립해양과학관"을 "국립해양과학관 등"으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"(법인격)"을 "(국립해양과학관 등의 법인격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.

-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해양과학관을 설립한다.
- 1. 국립해양과학관
- 2. 국립미래해양과학관
- ② 제1항의 해양과학관은 법인으로 한다.

제22조 중 "국립해양과학관이"를 "해양과학관이"로, "국립해양과학관 또는"을 "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과학관 명칭 또는"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"국립해양과학관"을 "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과학관명칭"으로 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설립준비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미래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(이하 "설립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여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. 이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② 설립위원회는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 - ③ 설립 당시의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.
 -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(連名) 으로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
 -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,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.
 - ⑥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이 설립될 때까지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.
 -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업무수행을 위하여

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·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- 제3조(물품의 무상양도)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(국립미래해 양과학관 건립·운영에 한정한다)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 (제16조제1항에 다른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「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립미래해양과학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,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- 제4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에 속한 권리·의무(국립미래해양과학관 건립·운영에 한정한다)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.
- 제5조(설립 당시의 예산)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은 설립 당시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(국립미래해양과학관 건립·운영에 한정한다)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
- 제6조(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)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설립 이후 최초 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.
- 제7조(직원임용의 특례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립미래

해양과학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 중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미래해양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본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「국가공무원법」상의 정년에 따른다. 다만,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직원의 정년이 「국가공무원법」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국립미래해양과학관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 정 안
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	<u>국립해양과학관 등의 설립 및</u> 운영에 관한 법률
제1조(목적) 이 법은 <u>국립해양과</u> <u>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</u>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 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·보존 ·전시·연구를 체계적으로 수 행하고,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 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.	제1조(목적) <u>국립해양과</u> <u>학관 등</u>
제2조(법인격) 국립해양과학관(이 하 "해양과학관"이라 한다)은 법인으로 한다.	제2조(국립해양과학관 등의 법인 격)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해 양과학관을 설립한다. 1. 국립해양과학관 2. 국립미래해양과학관 ② 제1항의 해양과학관은 법인
제22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<u>국립해양과학관이</u> 아	으로 한다. 제22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<u>해양과학관이</u>

닌 자는 <u>국립해양과학관 또는</u>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.

제26조(과태료) ① 제22조를 위반 하여 <u>국립해양과학관</u>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.

② (생 략)

<u>제2조제1항 각 호의 해</u>
양과학관 명칭 또는
제26조(과태료) ①
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
<u>과학관 명칭</u>
② (현행과 같음)